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8.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8월 30일
전문위원 최 광 호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69
- 나. 발 의 자: 이종숙 의원 외 7명
- 다. 발의일자: 2021년 7월 21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2. 개정이유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 및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변경(제명)
- 나.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등”으로 확대(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 다.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안 제23조, 안 제27조)
- 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3조)
- 마.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현행화(안 제3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및 제15조
- 2) 「정부조직법」 제26조

나. 협조부서 : 기획예산과

다. 입법예고(2021.8.17.~2021.8.22.)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2021. 10. 21. 시행되는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에서 직무발명의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등”으로 확대하여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근거까지 마련하여 소속 직원 간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강행규정 “한다”에서 임의규정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승계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2조, 안 제23조, 안제27조에서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 안 제30조에서는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비하였음
- 안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제20조, 제23조제1호 및 제2호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음

다. 종합 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발명진흥법」(2021. 10. 21. 시행)의 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특허관리와 직무발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규정 내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6. 8., 2013. 7. 30., 2015. 5. 18.>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 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시행일 : 2021. 10. 21.] 제10조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15조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